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18(금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이재평, 서기관 박진호 ·☎ (044) 201-3384, 338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-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%까지 높이고,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시행령 개정*을 추진 중에 있으며,

* (종전) 세대수 20% (15%+세입자 많은 경우 5%p 추가 가능), 상업지역 제외
(개선) 세대수 30% (20%+세입자 多, 주택수급 고려 10%p 추가 가능), 상업지역 포함

- 입법예고('19.9.4~10.14, 40일간)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-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

-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,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,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: 서울경제, 10.18.(금) >

- ◆ 재개발 '임대비율 30%' 적용 대상 줄어드나
 -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
 - 공급부족 등 시장위축 우려에 신규사업장부터 적용 유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박진호 서기관(☎ 044-201-33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